

징계부가금 부과 기준(제160조의2 관련)

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	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	비위의 정도가 약하고, 경과실 인 경우
1. 법 제78조의2제1 항제1호의 행위	금품비위금액 등의 4~5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3~4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2~3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1~2배
2. 법 제78조의2제1 항제2호의 행위	금품비위금액 등의 3~5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2~3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2배	금품비위금액 등의 1배
※ 비고 1. "금품비위금액등"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 2.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(整數)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는 금품비위금액등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한다.				